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”이란 별표 2 제27호 펜타닐(Fentanyl)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를 말한다.

③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“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
2.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
3.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
4. 입원환자(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시는 제외한다)에게 처방하는 경우
5.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

별표 10 제2호 사목부터 타목을 각각 아목부터 파목으로 하고, 같은 호

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제1항제6의2호	경고	30만원	100만원
--	----------------	----	------	---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최초로 발급한 처방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마약의 투약) (생략)	제11조(마약의 투약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설>	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”이란 별표 2 제27호 펜타닐(Fentanyl)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를 말한다.
<신설>	③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“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	1.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
	2.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
	3.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
	4. 입원환자(간단한 외과적 처

	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시는 제외한다)에게 처방하는 경우
	5. 압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
부칙	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	
제2조(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최초로 발급한 처방전부터 적용한다.	